

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함으로써 위법성을 해소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
 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2조
 -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,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하도록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</u> <u>례</u></p>	<p><u>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사회간접</u> <u>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</u> <u>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</u> <u>9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민</u> <u>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</u> <u>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</u> <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</u> <u>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위촉기간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2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</u> <u>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사회</u> <u>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</u>」 <u>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</u> <u>조제10항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위촉기간) ① ----- -----<u>하며, 한 차례</u> <u>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수당 및 여비) ----- ----- ----- <u>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</u> <u>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-----</u> 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경제체육과장 한 왕 기
연 락 처	(033)330-2540

관계 법령

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제6조 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-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·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제4조 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

- ① ~ ⑨ 생략
-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. 다만,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